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맥내 평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같음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전 8시 30분

2.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156 하이셀(주) 별관 1층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6기(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분계산서)

-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별첨1 참조]

-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규정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다. 기타보고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등을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 및 게재하였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시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시 : 주총참석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위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별첨2 참조] 의결권 행사 안내문 참조

2014년 3월

하이셀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양근, 이용복
명의개서 대리인 하나은행증권대행부

<별 첨1>

하이셀(주) 정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2조(목적)</p> <p>1. 전자부품 제조, 판매 및 수출업</p> <p>2~14(생략)</p> <p><u>15.해외석유광구 개발, 생산 및 판매업</u></p> <p><u>1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 보관 및 판매업</u></p> <p><u>17.환경에너지 설비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판매업</u></p> <p><u>18.환경설비 제조 및 판매사업</u></p> <p><u>19.바이오디젤, 식물성유지 생산, 설비 설치 및 제조, 판매업</u></p> <p><u>20.토사석 채취업 및 동 가공판매업</u></p> <p><u>21.각종 환경오염 관련 시설 설비, 설계, 시공 및 관리업</u></p> <p><u>22.전자상거래업</u></p> <p><u>23.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 및 임대업</u></p> <p><u>24.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u></p> <p><u>25.데이터베이스검색, 개발 및 판매업</u></p> <p><u>26.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u></p> <p><u>27.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u></p> <p><u>28.게임개발 및 판매업</u></p> <p><u>29.전자 금융업</u></p> <p><u>30.전자지급 결제 대행업</u></p> <p><u>31.직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u></p> <p><u>32.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결상기기(터치스크린 및 터치스크린 구동회로)의 제조 및 판매업</u></p> <p><u>33.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결상기기(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한 평판표시소자 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u></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u>34.전 각호의 관련 기술자문 용역업</u></p> <p><u>35.전 각호의 수출입업</u></p> <p><u>36.기타 위에 부대하는 사업</u></p>	<p>제2조(목적)</p> <p>1. 전자부품 제조, <u>유통</u>, 판매 및 수출업</p> <p>2~14(현행과 동일)</p> <p>(삭제)</p> <p>(삭제)</p> <p><u>15. 환경에너지 설비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판매업</u></p> <p><u>16. 환경설비 제조 및 판매사업</u></p> <p>(삭제)</p> <p>(삭제)</p> <p><u>17. 각종 환경오염 관련 시설 설비, 설계, 시공 및 관리업</u></p> <p><u>18. 전자상거래업</u></p> <p><u>19. 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 및 임대업</u></p> <p><u>20.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u></p> <p><u>21. 데이터베이스검색, 개발 및 판매업</u></p> <p><u>22.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u></p> <p><u>23.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u></p> <p><u>24. 게임개발 및 판매업</u></p> <p><u>25. 전자 금융업</u></p> <p><u>26.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u></p> <p><u>27. 직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u></p> <p><u>28.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결상기기(터치스크린 및 터치스크린 구동회로)의 제조 및 판매업</u></p> <p><u>29.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결상기기(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한 평판표시소자 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u></p> <p><u>30. 위성용 장비의 부품개발, 유통, 판매업</u></p> <p><u>31. 자동차용 전자장비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u></p> <p><u>32. 스마트카 및 전자제품용 3D 디스플레이 부품의 제조, 판매업</u></p> <p><u>33.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을 활용한 관련 제품, 부품, 장비의 연구개발, 제조, 가공, 판매 및 마케팅</u></p> <p><u>34. 스마트카드 및 단말기 제조, 판매, 서비스업</u></p> <p><u>35. 스마트카드 관련 기술연구 및 컨설팅업</u></p> <p><u>36. 회로기판 재료 제조 및 판매업</u></p> <p><u>37. 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u></p> <p><u>38. 전 각호의 관련 기술자문 용역업</u></p> <p><u>39. 전 각호의 수출입업</u></p> <p><u>40. 기타 위에 부대하는 사업</u></p>	<p>사업목적 추가, 삭제, 조문 번호 정리</p>
<p>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p> <p>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u>200,000,000주</u></p>	<p>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p> <p>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u>500,000,000주</u></p>	<p>수권주식 수 증가</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단, 기존의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 하는 경우와 본조 및 본정관의 제33조와 제44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80%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p>	<p>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단, <u>이사회</u>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치지 않은 기존의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와 본조 및 본정관의 제33조와, 제34조, 제35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80%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한다.</p>	<p>임원해임 요건가중</p>
<p>제34조(이사의 선임)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④ 항 신설</p>	<p>제34조(이사의 선임) ② <u>이사회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친</u> 이사의선임은 출석한주주의의결권의과반수로하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④ <u>이사회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 참석과 출석주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이와 같은 결의방법을 적용할 안건은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적시하여야 한다.</u></p>	<p>이사회 동의 거치지 않은 이사선임 요건강화</p>
<p>제35조(이사의 임기) ④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실직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금 보상액으로 대표이사 30억 이상, 일반이사 20억이상을 지급해야 한다.</p>	<p>제35조(이사의 임기) ④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실직할 경우에는 <u>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60억원, 일반이사에게 30억원의 퇴직위로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u></p>	<p>퇴직보상 금 증액</p>
<p>제36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사장) 1명,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36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한다.</p>	<p>문구수정</p>
<p>(추가)</p>	<p>(부칙)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안내문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방법 안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데, 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질주주가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부처> 150-9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4년 3월 14일(※주주총회 5일 전)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4년 3월 21일 개최하는 하이셀주식회사의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 사 표 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주식수			

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주소

(인 또는 서명)